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(임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14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19.

발 의 자 : 임미애 · 박지혜 · 권향엽
진성준 · 서미화 · 정일영
이수진 · 박지원 · 이연희
김남근 · 김 윤 · 송옥주
윤종오 · 전종덕 · 박해철
최혁진 · 이원택 · 이재관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 · 복합화 되면서 인명 ·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. 산불은 주거지와 기반시설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진화와 현장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함.

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소방당국의 산불진압업무가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되면서 산불 발생 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산불발생 시 소방이 적극적으로 산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의 산불진압업무를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변경하고자 함(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제1항제1호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613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소방관서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(협조) 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 진화,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 1. 소방관서(「소방기본법」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한정한다) 2. ~ 7. (생략) ②·③ (생략)	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(협조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. 1. 소방관서 2. ~ 7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